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26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339호)	장철민의원	2025. 2. 21.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21.) 상정/축조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616호)	이정현의원	2025. 5. 28.	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축조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633호)	이정현의원	2025. 5. 29.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21.) 상정/축조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720호)	최민희의원	2025. 7. 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766호)	최민희의원	2025. 7. 28.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1.17.)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 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축조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795호)	최민희의원	2025. 7. 29.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21.) 상정/축조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675호)	최민희의원	2025. 9.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749호)	최민희의원	2025. 9.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297호)	최보윤의원	2025. 9. 25.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1.17.)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 위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21.) 상정/축조심사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18.)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1.)는 위의 대안을 번안의결한 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이른바 인공지능취약계층과 일반인의 격차를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

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60명 이내로,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확대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 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

조 및 제10조제4항).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 마.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항).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자.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성”을 “안전성·접근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을 “정책 등”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위원장 1명”을 “3명 이내의 부위원장”으로, “45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항제4호”를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정책”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략”을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

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특  
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  
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를 “학습용데이터”로, “유통 및 활용 등을 촉  
진하기 위하여”를 “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지원”을 “시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의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활성화”를 “활성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지원을 위한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 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

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제8호, 제16조제3항·제4항·제5항, 제17조의2,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u>&lt;신 설&gt;</u></p>	<p>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p> <p>제2조(정의)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u></p>
<p>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p>	<p>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p>





<p>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u>국가인공지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u>----- -----.</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u>부위원장 1명</u>을 포함한 <u>4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p>	<p>② -----<u>3명</u> <u>이내의 부위원장</u>을 -----<u>60명</u>-----. ----- ----- ----- -----.</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u>제4항제4호</u>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lt;<u>후단 신설</u>&gt;</p>	<p>③ ----- -----<u>제4항 제1호</u> 또는 <u>제4호</u>에----- ----- -----.</p>
<p>④ ~ ⑯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④ ~ ⑯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 ----- -----.</p>
<p>1. (생략) 2. 인공지능등 관련 <u>정책</u>에 관한 사항</p>	<p>1. (현행과 같음) 2. -----<u>국가 비전</u>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p>
<p>&lt;<u>신설</u>&gt;</p>	<p>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p>

<p><u>&lt;신 설&gt;</u></p> <p>3. (생 략)</p> <p>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p> <p>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생 략)</p> <p><u>&lt;신 설&gt;</u></p> <p>7. ~ 13.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p> <p><u>&lt;신 설&gt;</u></p>	<p><u>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p> <p>3. (현행과 같음)</p> <p>4.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p> <p>-----</p> <p>5. (현행과 같음)</p> <p><u>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p> <p><u>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현행과 같음)</p> <p><u>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u></p> <p>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u></p>
--	---

<p>④ 그 밖에 <u>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 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 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 · 수집 · 관리 · 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 · 활용 지원) &lt;신설&gt;</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p>	<p>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⑤ -----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p> <p>-----.</p> <p>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p> <p>-----</p> <p>-----</p> <p>-----.</p> <p>학습용데이터의 -----</p> <p>----- 유통 · 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p> <p>-----.</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 · 활용 시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p> <p>-----.</p>
--	---

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신 설>

<신 설>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 · 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 5.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

<p>② <u>제1항에</u> 따른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p> <p><u>&lt;신 설&gt;</u></p> <p>제18조(창업의 활성화) ① · 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u>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u> <u>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u> <u>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⑤ 제2항에</u>----- -----.</p> <p><u>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u> <u>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u></p> <p><u>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u> <u>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u> <u>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u> <u>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u> <u>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u> <u>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u> <u>있다.</u></p> <p><u>② 제1항에</u>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p> <p>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 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p>
--	--

## <신 설>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  
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 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  
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  
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있다.

<신 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신 설>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  
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신 설>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신 설>

4. 전문인력의 국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신 설>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신 설>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  
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지원을 위한 사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  
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  
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  
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  
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

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 규정

###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

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

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

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

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

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

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

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

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p><u>&lt;신 설&gt;</u></p> <p>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lt;후단 신설&gt;</u></p> <p>② • ③ (생략)</p>	<p>다.</p> <p>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 ① -----      -----      -----      -----      -----      -----      -----.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